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미래의 디딤들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 모종화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무청도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와 '입영전 병역진로 설계 제도' 도입, 'AI 기반의 24시간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살려 군복무를 선택하고 진로까지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Alvin Toffler)는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걸 일부러 잊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러분들도 병역 이행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군복무를 비롯한 미래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병역이행 과정을 미리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부터 맞춤형 군복무 방법, 예비군 복무까지의 이행절차가 담겨져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은 물론, 적성과 연계한 군복무를 통한 전역 후 진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안내서를 이용하여 병역이행 기간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병 무 청 장 모 종 화 모 종 화



목차

- 들어가기 전에 ... 6
-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 8

01 병역판정검사

- ▣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12
- ▣ 질병 발생·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16
- ▣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 19

02 현역병 입영

- ▣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22
- ▣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 23
-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4
- ▣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25
- ▣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 26
- ▣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27
-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 28
- ▣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은데 방법은? ... 29
-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30
-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31
- ▣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31
- ▣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32
- ▣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 32

03 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 36
- ▣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37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 38
-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 39
-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40
-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42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44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45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 46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 47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는? ... 48
-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49
-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 50
-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 51
-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 52

04 대체역

- ▣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 54
- ▣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 55
-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 56

05 병력동원훈련

- ▣ 병력동원훈련은? ... 58

06 기타

-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62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 64
-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 65
- ▣ 병무부조리 신고 ... 66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군대를 간다!

-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1, 2학년때 제일 많이 입영한다.
- 현역병 연령별 입영현황(2019.12.31 기준)

구분	계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이상
종합 (육해공군)	224,062	1,192	31,713	120,995	42,788	13,278	5,774	3,288	5,034
	%	0.5	14.2	54.0	19.1	5.9	2.6	1.5	2.2



내 친구들이 하나, 둘 조기 입영하는 이유는?

- 대한민국의 멋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
- 대학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입영 선호시기에 입영 희망
- 대학의 전공, 자격증과 유사한 부분의 실전 경험을 쌓고 싶어서



군대 입영은 왜 두려운가?

- 부모님 등 가족과 헤어져 잘 생활할 수 있을까?
- 혼자 낯선 사람과 잘 생활할 수 있을까?
- 사회와 단절된 군부대 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
-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군생활을 사회와 연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대학전공과 연계한 입영
- 사회경력(자격증)과 연계한 입영
- 군생활하면서 학점 이수 할 수 있는 분야,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 등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사회진출시 해당분야에서 취업가능

그렇다면 병역의무 이행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병역의무이행은 어떻게 할까?

-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 참조)
 - 매년 2월~3월 중 다음연도 입영 신청 시기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
- 나의 전공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자세한 사항은 26페이지 참조)
 - 매월 병무청에서 각 군별로 모집, “병무청 누리집 초기화면의 군지원(모병) 안내” 활용 지원
-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자세한 사항은 42페이지 참조)
 - 편입절차 병무청 누리집 활용
-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세한 사항은 42페이지 참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기술자격증 필요 없음/단,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별도 자격 요건 필요)
 - 편입절차 병무청 누리집 활용
- 보충역 처분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세한 사항은 36페이지 참조)
 - 매년 11월~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

-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및 교육
- 군 복무 중 자기계발에 대한 정보 제공
- 군 전투장비, 군복, 전투식량 시식 체험, 병사와의 대화
 - *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 참조)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상담,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목적

- 군 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 연계 의무자 지원
 - *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일자리 쏙, '18.3.15)
- 입영 전 - 복무 중 - 전역 후 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 추진
 - * (「입영 전」 병무청)병역진로설계 → (「복무 중」 각 군)개인 경력개발 → (「전역 후」 고용부 등) 취업지원
 - (서비스 내용) **맞춤 병역진로상담** + **군 생활 정보제공** + **군 적응 체험·교육**

주요 내용

병역진로 상담	① 군 특기 연계, 인·적성검사 실시(직업선호도검사) ②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 군 생활 안내 및 상담 → (고용부 등) 취업지원 안내 및 상담	 1:1 전문상담
정보제공	①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등) ②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③ 병무청·각 군 홍보 부스 운영 및 퀴즈 골든벨	 설명회
군 적응 체험·교육	①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포토존 운영 ② 군 전투 장비·군복·전투식량 시식 체험 ③ 복무 중인 병사와의 대화	 드론 시뮬레이터

신청 방법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개인/단체, '20. 7월부터 운영)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서식 → 기타서식(11번) 작성 후 팩스(1588-8999) 송부
 - '20. 11월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

경제적·신체적 약자 병역이행 등 지원

경제적 약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병역이행 동참을 지원하고, 중증질환이 있는 신체적 약자의 병역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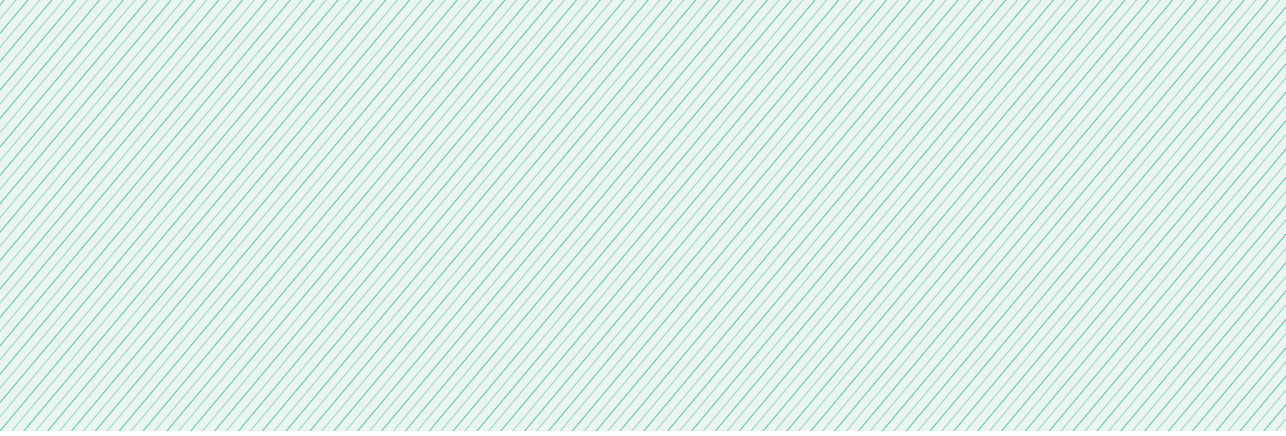
경제적 약자 지원

지원과제	지원대상	신청대상(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동반입대 • 해병 : 기술 • 공군 : 기술	가산점 4점 부여 (모집병 접수기간에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20세(고졸)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0년 2~12월 중 입영희망일 반영 (매년 1~4월 신청)	
우선 위탁검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의뢰
사회복무요원 검직허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검직 허가	복무기관에 서류제출 (검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내 우선순위 인원배정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매년 6월)

신체적 약자 지원

지원과제	신청대상	대상질환	지원내용	신청방법
약성혈액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약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에 서류제출 •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병무용진단서 • 의무기록지 등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신체등급 5급~6급) 여부 결정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01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질병 발생 · 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받을까?

» 병역판정검사란?

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

■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

-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2000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신청방법

-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일자(장소)변경



- 학생, 학원수강생(직업전문학교 재학생 포함), 직장인 등이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검사장소 선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공공/민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본인선택(변경) 가능
-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전까지 신청 또는 변경 가능
-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신분증 제시)
-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0. 2. 3. ~ 12. 11.

-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조회

- 병무청 누리집 → 병무인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조회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 본인선택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본인선택 시 입력한 이메일과 모바일 병무청 앱에서 확인



»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병역판정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 연기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병역판정검사일 5일전까지



구비 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 서식)
- 진단서 등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 24세 이하로 해외출국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으로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연기됨

»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무용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단, 수술 등의 경우는 비지정 병원 가능) 또는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등 • 영상자료(CD 등)
수형자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전·공상자 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병역판정검사 과정

■ 병역판정검사 실시

-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개인이 가져온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
- 신체 건강한 자 : 기본검사 → 신체등급판정
- 정밀검사자 : 기본검사 → 해당과목 정밀검사 → 신체등급판정





■ 병역판정검사 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사진등록) 및 신상명세서 작성 ▶ 심리검사 ▶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 촬영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측정 ▶ 시력 측정 ▶ 각 과별 신체검사(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소요시간 : 3~4시간 정도(오전반 08:00, 오후반 13:00에 시작)

»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 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 신체검사
고 졸							
고 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졸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1~3급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자)

※ 학력사유(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 용어설명

- 전시근로역 : 전시에 소집되어 군사 업무를 지원
- 병역면제 : 군복무 의무 모두 면제(전시 포함)
- 재신체검사 : 해당 질병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게 됨

용 어 설명

- ✓ 임상병리검사 : 인체에서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하여 생화학, 면역학, 노화학 분석 등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
- ✓ 방사선 촬영 : 방사선 투과량 차이를 이용,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 신체골격계 및 연부 조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질병 발생·악화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재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제한 :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개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

■ 신청방법

- 방 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과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신청

■ 신청서류

- 병역처분변경신청서(민원실 비치)
- 병무용진단서(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 병원 병무용진단서도 가능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방사선 등 영상자료(CD 등)와 같은 질병 증빙자료 지참
- 학력증명서(학력변동자에 한함)



지정병원 목록 확인은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 지정 병원 : 병무용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고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관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관리
- ✓ 병무용진단서 :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병·의원에서 질병상태와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록한 진단서



» 재병역판정검사

의료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반영, 병역판정검사 후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 2)
 -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 (소집) 하지 않은 사람



연도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200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13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8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4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5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2020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바뀔 경우, 바뀐 병역처분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됨 (보충역 → 현역대상 등)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일연기가 가능
 -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입영하지 않을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검사시기
 -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하여 실시함
 - ※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임의 지정 통지함

»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 관련규정 :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 경찰청 및 유관기관 조회 결과 등을 확인하여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치료내역 확인과 본인·관련자 면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

■ 주요내용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신체등급 판정
-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 소명 기회 부여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 병역면탈 범죄자로 확정된 경우는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과



tip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목적은?

» 특별사법경찰 제도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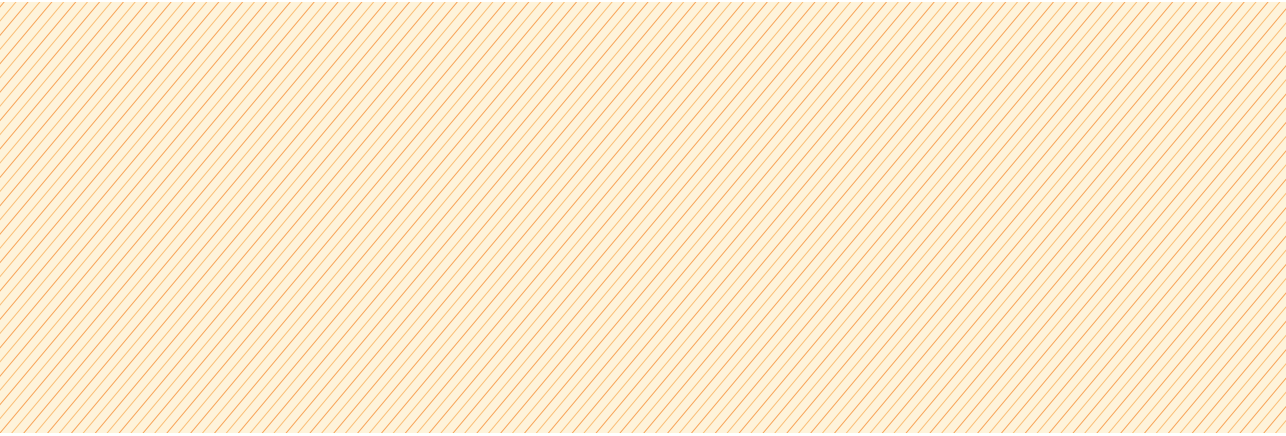
- 병무청 직원에게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12.4.18.)하여 신체검사 현장에서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확보 등 사후 추적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정착

■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41호 및 같은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38호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훈령 제1676호, 2020.2.26.)

■ 『특별사법경찰권』 적용 직무

-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단속(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의 대리수검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제1항)



● ● ●  미래의 디딤들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0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현역병 입영

-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는데 방법은?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특수병과(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현역병 입영 자격 및 시기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해 부터 입영
(단, 모집병은 18세부터 지원입영 가능, 일반 징집병은 인원 부족시 예외적 접수)
 -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대학별 제한연령 범위 내 입영 연기
 - 다만, 대학 재학 연기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다음연도 입영일자」 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신청하거나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서 입영 가능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과 '재학생/국외체재자 입영신청'이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통합 일원화 됨

- 「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대상/기간 : 모든 현역병입영대상자 / 연중(7~12월)
 - 방법(선착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결정 : 입영일자 신청 즉시, 전산에 의해 부대까지 자동 결정
 - ※ 28세 이상자와 입영일자 연기 만료자 등 별도 입영대상자는 제외
-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
 - 대상/기간 : 모든 현역병입영대상자 / 연중(1~11월)
 - 방법(선착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결정 : 입영일자 선택 즉시, 전산에 의해 부대까지 자동결정
 - ※ 다음연도 입영대상자인 19세 고졸자 및 졸업예정자는 다음해 5월 이전까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5월 이후 병무청에서 직권 입영일자 결정(28세 이상자는 선택 불가)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조회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부대조회
- 현역병입영 통지서 받는 방법/시기
 - 받는 방법 : 이메일,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받는 시기 : 입영일 45일전에 본인에게 송부

»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 육군·해병대 병 : 21→18개월, 해군 병 : 23→20개월, 공군 병 : 24→21개월
 - ※ 병무청 누리집 복무기간 단축 일수 조회(전역일 계산기) 참고



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언제 입영하는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이 연기됨

⇒ 입영 희망시 '다음연도 입영일자' 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을 신청해서 입영해야 함

» 대상학교

- 고등학교(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격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등 포함)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재원 중인 자는 비대상

» 학교별 제한연령

고 등 학 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 법 연 수 원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 약학 계열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년 제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위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치위학 전문대학원		
28 세	22 세	23 세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6 세	27 세	28 세	28 세	28 세	26 세

※ 졸업,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통지

» 입영연기 절차

-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는 시·도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전산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직권 입영연기 처리

⇒ 입영연기 처리 전 입영통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연기

» 제한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령으로서,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함

» 대학생이 장기간 입영 대기하지 않으려면?

- 본인 선택으로 입영일이 결정 되었거나, 모집병에 최종 합격한 이후라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입영일자 연기제도

입영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입영 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질병,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대학입시 등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간 범위에서 연기



자세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확인은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 입영일자 연기는 연기한 횟수, 기한을 합산하여 5회,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됨. 단, 재학생입영연기, 국외입영연기 중에 입영일자로부터 15일이전까지 본인선택 취소가능

■ 고졸이하자 취업연기

-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중인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및 단시간 임시직 취업자 등은 제외

■ 연기원 신청방법

- 입영일 5일전까지 입영일자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해당지방병무청에 제출 (인터넷, 방문, 팩스로 신청)

» 입영 연기제도

입영일자 결정 또는 입영일자 통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재학생 입영 연기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은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국외 입영 연기

- 24세 이하자 : 6개월 이상 국외체재중인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연기
- 25세 이상자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허가기간까지 연기.
단, 단기국외여행허가자는 연기 비대상
- 국외이주자, 영주권자 등은 37세까지 연기



현역병 입영시 주의할 사항 및 준비물은?

» 주의할 사항

- 재학생은 입영하기 전 휴학(일반휴학→군 입영휴학) 및 휴대폰 일시정지 조치 (입영통지서 복사본 사용 → 등기로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3부를 복사하여 사용)
- 자대배치 후 희망자는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사용 가능(국방부 누리집 참고)
 - ☞ 해당 요금제 사용 희망 시, 입영 전 장기 약정 요금제 가입 지양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는 자동면제되나, 군 복무기간 원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으니 사전 조치 필요(문의 ☎1599-2000)
-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지양
 -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음
 - ※ 입영 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더 유념!
-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하시기 바람
- 두발은 3cm 스포츠형, 복장은 간소복으로 입영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 바느질세트, 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입영 부대에서 지급함
 - ※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부대에서 회수 후 집으로 돌려보냄

» 준비물

-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본 안내문 뒷면의 6.25 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 휴대전화 반입 금지(자대배치 후 허용)
- 나라사랑카드에 소액 입금(귀가 등 유사시 필요)



동 어설명

- ✓ 나라사랑카드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받아 병역판정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 까지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온라인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



현역 모집병의 경우 “모집하는 분야”는?

» 육군 모집분야

- 기술행정병(통신운용/정비, 조리 등 143개 특기)
 - 다양한 기술자격·면허, 전공과 관련 있는 군사특기에 복무
- 전문특기병(어학병, 군악병 등 50개 특기)
 -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사특기에 복무
-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이 내무생활이 가능한 단위부대에서 복무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 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
(지원가능 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33개 부대)
- 연고지복무병
 - 생활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전방부대에서 복무(지원가능 연고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7개 지역)
- 취업맞춤특기병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
- 카투사
 -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군 소속의 육군 요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

» 해군·해병 모집분야

- 해군 : 일반·기술병 13개 계열, 동반입대병, 전문특기병(군악병, 문화홍보병, 특전병, 심해잠수병, 통·번역병, 어학병, 전문정보병, 바독지도병, 군종병, 지식재산관리병, 미디어병, 정보보호병, CBT병, SW개발병, 전문의무병), 취업맞춤특기병
- 해병 : 일반·기술병 8개 계열, 전문특기병(군악병), 취업맞춤특기병

» 공군 모집분야

- 일반·기술병 9개직종, 전문특기병(의장병, 군악병, 정보보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군견관리병, 군종병, 영어어학병,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식별보조병, 이발병, 전문자격의무병, 웹디자인병, 드론전문병, 비파괴검사병, 우주기상분석병, 기상슈퍼컴퓨터분석보조병, 소음자료관리병, 운항관리병, 재무회계병), 취업맞춤특기병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



현역 모집병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 지원일정 및 입영일

- 군별로 모집시기는 다르나 월말~익월초 지원가능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공지)
- 모집지원에서 입영까지 약 3~4개월 소요

» 지원방법

-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서 작성시 본인의 전공, 자격증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지원 가능특기를 조회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없이 지원가능특기 확인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가능분야 검색

- 모집병 선발은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육군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전산 추첨으로 선발됨

» 인터넷 지원 요령

- 병무청 누리집 접속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로그인 → 지원서 작성
- 로그인 방법 : 공인인증서, 아이디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 1차 합격자 발표 후 수험표 출력가능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함

» 제도 장점 및 혜택

■ 입영 전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음(훈련비 지원)
- 기술훈련을 마친 후
 -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취업하게 되면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 군 복무

-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 받은 분야에서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자격 취득, 기술 숙련, 검정고시 응시 등 경력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

■ 전역 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관련분야 취업지원 및 다양한 취업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됨
- 전역후 3개월내 취업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고용노동부)을 지급받음(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 참여자)

입영전(기술훈련)	군 복무	전역 후(사회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 훈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기술병 군 복무 • 자격취득·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가능 • 취업 시 24세 까지 입영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 후 취업지원, 정보제공 •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I 참여자)



현역 모집병 중 ‘카투사’에 지원 입영하고 싶은데 방법은?

» 카투사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 어학성적이 정기시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TOEIC	TOEIC Speaking	TEPS (NEW TEPS)	TEPS Speaking	TOEFL IBT	TOEFL PBT	G-TELP Level 2	FLEX	OPIc
780점 이상	140점 이상	690점이상 (380점이상)	61점 이상	83점 이상	561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IM2 이상
국내·외	국내·외	국내	국내	국내·외	국외	국내	국내	국내

* 어학성적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 접수기간 : 매년 9월경

» 제출서류

- 어학성적표 사본 1부 : 국외 TOEIC 응시자, 국외 TOEIC Speaking응시자, 국내·외 TOEIC 응시자
* 국내 TOEIC 등 그 외 시험 응시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성적조회 동의서 : 일본 토익 응시자만 제출

» 선발일정 등

- 선발시기 : 매년 10~11월 경
- 선발방법 :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을 적용,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 공개선발
- 입영시기 : 선발되어 합격한 사람은 지원시 작성한 입영희망월(다음해 1~12월)에 입영

» 유의사항

-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함



한국군에 근무하는 어학병 모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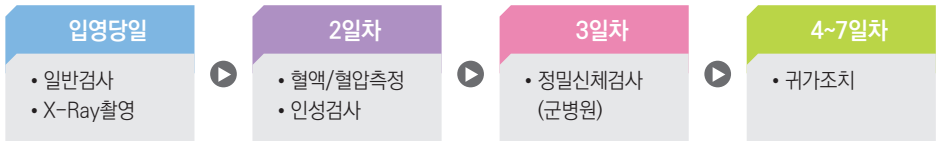
- 신체요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모집분야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어학능력 평가장소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현역병 입영한 사람이 귀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훈련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 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귀가 조치하여 질병 등을 치유한 후 입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 과정



※ 입영부대 또는 질병상태에 따라 신체검사 일차별 과정이 다를 수 있음

» 귀가자에 대한 행정조치

-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 경과 후 가장 빠른 입영일자로 다시 입영통지
- 치유기간 3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없이 귀가한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2회 이상 반복 귀가(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하여 재 귀가한 경우)
 - 치유기간 명시되지 않는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명시된 사람 : 명시된 치유기간 경과후 재신체검사 실시

※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에 따라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



현역병 입영한 사람의 훈련기간과 부대배치는?

» 육군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7개 향토사단 (31, 32, 35, 37, 39, 50, 53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8개) : 7, 12, 15, 21, 22, 23, 27, 36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10개) : 1, 3, 5, 6, 9, 25, 28, 30, 51, 55사단

» 훈련기간

- 6주(신체·적성검사 1주 + 기본군사훈련 5주)
- 입영 1주차는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적성검사를 받은 후 2주차부터 5주간의 기본 신병 교육을 받음
 - ※ 5주간의 기본 신병교육과정 수료 후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부대별 특성에 맞는 전투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심화교육과정은 부대 및 특기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르며, 후반기 교육에 편성된 특기병의 경우 병과학교에 입교하면 교육수료 후 복무하게 될 부대로 전속됨)

» 부대 배치

- 육군본부 누리집 신병부대배치 조회
 - 입영 2~6주차 확인 가능(입영부대마다 다름)



입영 후 아들이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 각 훈련소 누리집 방문

- 신병교육대 누리집 (카페) 운영
 - 대한민국 육군(<http://www.army.mil.kr>) → 국민마당 → 신병사진보기
 - 훈련병 사진 탑재, 훈련소 생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아들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편지작성이 가능함



입영 후 첫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병의 영외(군부대 밖)면회 실시

- 신병교육대 누리집 (카페) 운영
 - 면회 일정은 부대별로 상이, 각 부대에서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면회 실시
 - 자대배치 되면 면회 가능



특수병과(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 지원대상

- 의무사관후보생
 - 의사(치과 의사·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 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법무사관후보생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군종사관후보생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수의사관후보생
 -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장교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 어설명

-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특수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전에 선발 관리하여 적기에 총원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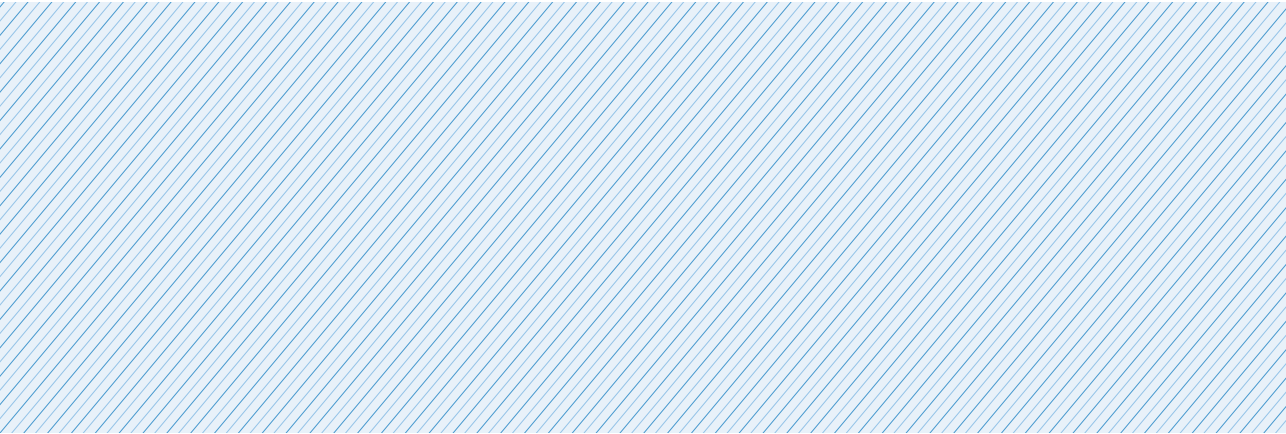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병적관리

■ 의무·법무·수의 : 병무청장이 선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편입 관리

- 의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련기관의 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제출
 -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 편입된 사람은 취소불가
- 법무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
- 수의 : 지원서(신원진술서 등 포함)를 수의과대학장을 경유,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생은 본과 1학년이 되는 해, 2018.1.1.이후 수의과대학 입학생은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31일까지 제출

» 입영

구분	입영대상	역종분류 및 입교(입영)
의무사관 후보생	수련과정 수료자, 수련중단자, 연기사유 해소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군의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통상 2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입영자부터 국군의무학교 신체검사를 폐지, 입영하는 해 1.10일 기준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한 신체등급으로 역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군의장교 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통상 3월초, 6주 교육 : 학군교 4주, 국군의무학교 등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역(공중보건의, 병역판정전담의) - 육군훈련소 입영(통상 3월 중순, 4주 교육)
법무사관 후보생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법무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법무장교 분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통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월 하순, 9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역(공익법무관) - 육군훈련소 입영(4주 교육)
군중사관 후보생	국방부의 입영 계획에 따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4월 중, 9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역 없음
수의사관 후보생	수의과대학 졸업 후 수의사 자격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관후보생과 동일함



● ● ●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0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1~3급자 중 고퇴 이하자, 수형·전공상 등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

» 복무기간 : 21개월(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

» 복무방법 : 출퇴근 근무하며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을 받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은?

구분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신청대상	소집대상자	소집대상자로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상자
접수시기	전년도 12월	전년도 11월	병무청 누리집 별도 공지
소집일자	일자·기관을 본인이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기관을 본인이 선택 • 본인 희망분기 신청 → 일자·기관 지방청장 결정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지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지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지 →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신청

※ 선복무 :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에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



사회복무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 군사교육소집 기간 : 30일 이내
 - 군사교육소집은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
 - 교육 내용 : 제식훈련, 경계, 사격, 행군, 화생방, 각개전투, 수류탄, 정신교육
 - ※ 훈련병들의 상태와 체력에 맞게 훈련의 강도 조절
- 군사교육소집제외자 : 정신과 4급 판정자, 문신/자해 4급 판정자 중 정신과 3급 포함자,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 경과자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교육의 종류

구분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교육		
	기본과정	디딤과정		나라	새롬	이음
주관	병무청		중앙행정기관	병무청		
내용	정신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 함양	사회진출 역량 함양, 사회복귀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 문지식 습득 및 복무 적응능력 배양	복무부실 예방과 성실 복무 유도		
시기	소집 후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소집 후 3개월 이내	복무지도대상 발생시	복무 기본 교육 후	
기간	4박 5일(합숙)	2박 3일(합숙)	1 ~ 2주	2박 3일(합숙)		

※ 교육기간은 교육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 복무기관 재지정(변경)제도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 복무기관을 변경하여 복무하는 것

» 처리절차



※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2일, 공휴일 포함) 복무기간에 산입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주소지 이전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병무청장이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지 이전 사항 확인으로 같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기준(복무기관 재지정 가능 요건)

- 정기 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 정기 노선차량이 없어 도로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를 초과하는 지역
- 정기 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질병,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는 임무(해당 분야의 업무배제)

- 기관지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아토피성피부염 :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철도·지하철 안전관리)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분야
 ※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했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고발 등으로 복무관리의 내실을 제고

» 복무규정위반자 사유별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비고
복무이탈 (법제33조)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명령위반 (법제33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포한 때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임무수행 태만 행위 (영제65조 의3)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한 때	• 7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 8회 이상 경고 :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 1회 경고 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복무지도 교육 중 대리 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복무중단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복무에서 배제하는 것

■ 대상

- 구속된 경우
-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하여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 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

■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 또는 감면사유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병무용 진단서
 - 전·공상 : 국가유공자 증명원
 - 수형 : 판결문사본, 형확정증명서, 수용증명서
 - 생계유지곤란 : 가사상황신고서 등 병역감면 서류



'병무용진단서' 인정범위

- 병무청 지정병원(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수술을 받은 병원
-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 분할복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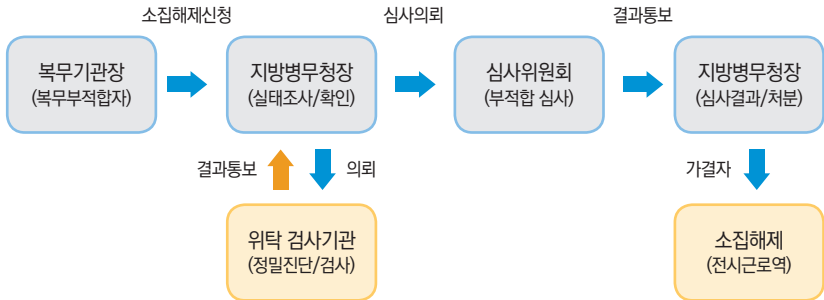
복무 중 질병치료나 생계지원,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내(본인 질병치료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1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 질병 이외 :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 재복무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

질병·심신장애, 수형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전시근로역) 처분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정
제
과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

- 정보화시스템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 절대 금지
-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인증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공유한 경우 법령에 의해 처벌
 - 복무연장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벌

대상	처벌	관련 법률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 후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 정부법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자		

※ 개인정보 유출 또는 타인에 대한 폭력·가혹행위 시 경고처분 즉시 고발하는 등 복무의무위반자 제재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추진 중



■ 복무중 유의할 복무의무위반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됩니다.

아래는 최근에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처분된 사례입니다.

- ① 복무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추후 병가서류 제출하여 병가 요구
- ②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병가 증빙서류로 제출
- ③ 근무시간 중 복무지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는 등 무단이탈
- ④ 직원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개인정보 무단유출
- ⑤ 남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였을 때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집해제 전이라도 복학이 가능하나 남은 연가일수 만으로 복학이 불가능 함에도 복학하여 수학
- ⑥ 평소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때에도 불성실 복무
- ⑦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관련 글 수차례 게재
- ⑧ 어린이집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 아동 성추행

강
제
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신청대상(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학 렳	복무기관 / 편입대상
석사이상 학위취득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 / 채용된 근무자
•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군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군전공의 과정 중 별도 신청)	•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 선발전형 합격자 (보충역은 지원자격 충족시 선발) • 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원 자체 선발자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3년(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산정 제외)

» 산업기능요원

■ 현역입영대상자(의무복무기간 : 34개월)

- 신청대상 : 학력에 맞는 국가 기술자격 / 면허를 가진 사람(대학원 학력자는 신청불가)

| 학력별 기술자격증 등급 기준표

학 렳	해당기술자격 등급
대학교 4학년 졸업	기사 이상
전문대 졸업 대학교 3~4학년 중퇴·휴학자	산업기사 이상
고졸이하자 대학교 1~2학년 중퇴·휴학자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이상

※ '11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복무기간 : 23개월)

- 편입요건

제조·생산분야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 없이 편입가능
정보처리분야	정보처리 관련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2년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1년 이상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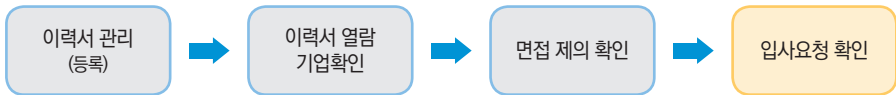
▶ 병역지정업체 정보제공

■ 전국 병역지정업체 조회 및 배정인원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공개/개방 ⇨ 정보공개/공유 ⇨ 정보공유 ⇨ 국·실별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 ※ 근무할 업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병역지정업체 모두 가능함
 - ※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로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
- 산업지원병역일터 ⇨ ‘병역지정업체 검색’ 및 ‘공지사항’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안내)

■ 산업지원병역일터(<http://work.mma.go.kr>) 에서 구직 신청 및 채용공고 조회 가능

- 구직신청(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 채용공고 조회 : 지역별·역종별(현역/보충역) 검색 가능

용어설명

-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제도 :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능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 산업지원병역일터 :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인·구직에 도움을 주고,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료 취업알선 사이트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구축한 시스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 군사교육소집 시기

-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고
- 희망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군사교육소집 일자/부대 안내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산업/승선 조회 및 발급
- ▶ 전문/산업/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부대 조회

» 군사교육소집 기간 : 4주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

» 군사교육소집 장소

- 육군훈련소 또는 향토사단 등



군사교육소집장소 안내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찾아가는길 ▶ 군사교육소집부대 가는길

»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임금 지급

- 병역지정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군사교육소집 연기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각종 시험응시 등
- 신청절차
 - 입영일 5일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연기신청
 -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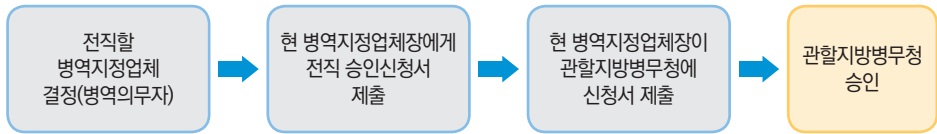
» 당연전직(의무적으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함)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 승인전직(승인을 받고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음)

- 일정기간(전문 : 1년 6개월, 산업 :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 통틀어 3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할 경우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등

» 전직절차



» 전직이 안 되는 경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
- 전직 시 핵심연구과제 중단 또는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분야 연구소 전직 시 핵심기술 유출위험이 있는 경우(전문연구요원)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산업기능요원) 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는?

» 편입취소 사유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전직대기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수학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함
-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기초군사교육)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 편입취소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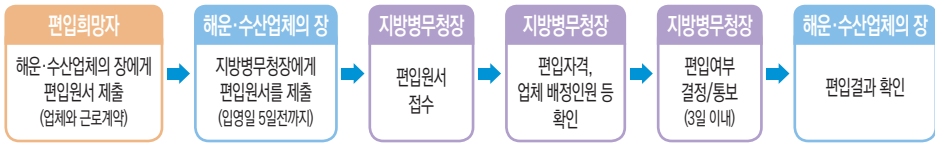
- 유보대상
 -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
 - 유보절차
 - 출원기간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서 또는 소송제기 서류
 - 유보결과 처리
 - 적법·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본인이 원할 경우 전직)
- ※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기준과 복무기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 업무흐름도



※ 업체정보 확인 : 산업지원병역일터(<http://work.mma.go.kr>) → 업체 검색(승선근무예비역)

» 편입 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 * 지정 교육기관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17개 학교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의무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제출 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 서식)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복무기관(해운·수산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시기

- 편입 후 최초 승선근무 전에 실시
- 승선 중 편입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실시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기간 : 3주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승선근무)기간에 산입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장소



군사교육소집 장소 안내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찾아 가는 길 ▶ 군사교육소집부대 가는 길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기간 중 임금 지급

- 해운·수산업체 사규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결정

»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교육) 연기

- 연기사유
 - 질병, 주요업무, 가족 위독 및 사망, 각종 시험응시 등
- 신청절차
 - 입영일 5일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운·수산업체장에게 연기 신청
 - 해운·수산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는?

» 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



승선근무 가능 선박

- (해운업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수산업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 승선근무기간

-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로부터 하선일
-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 선원법 제62조 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일수
- 군사교육소집기간

» 이동근무

- 본인희망(해당연도 배정인원이 남아 있는 업체만 가능)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감산 등의 사유로 해당규모*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
- 해운·수산업체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선박의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위탁 등으로 승선근무 할 선박이 없는 경우

» 이동근무가 제한 되는 경우

- 직무상 사망사고 및 인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된 해운·수산업체로 이동 근무하는 경우(이 경우, 본인희망 사유만 해당)

» 겸직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때에는 승선근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단,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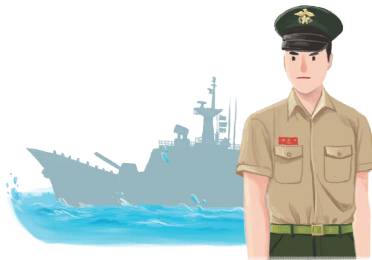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는?

» 편입취소 사유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 시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여야 함
-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0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대 체 역

-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 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

» 신청 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 ※ 30세까지 편입신청 가능(다만, 부칙 제3조 해당자는 30세 이상 신청 가능), 현역·보충역 등 복무 중인 사람 제외

» 제출 시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 ※ 대체역법 부칙 제1조에 따라 편입신청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접수 예정

» 제출 방법

- 인터넷 신청
 -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 우편송부, 모사전송

» 제출 서류

- 대체역 편입 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첨부 서류
 - ① 본인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② 부모 및 신청인과 친분 있는 3명 이상 주변인 진술서(신분증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 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⑥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⑦ 그 밖에 양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 대한 현역병 등 입영(소집) 연기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영(소집) 연기 조치
- 2회 이상 신청인은 입영(소집) 연기 제외
 - ※ 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정 시 입영(소집) 연기 가능



대체역 편입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 및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신청인의 진정성을 판단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 결정

» 대체역 심사위원회

- 병무청 소속 위원회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 ·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 위원 구성

- 구 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총 29명
- 자격요건 :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추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6개 기관

» 처리 절차



»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제

- 신청인이 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대체역 편입

- 신청인은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에 소집되어 대체업무에 복무

» 복무관리 주체

- 소관중앙행정기관장(총괄 지휘·감독), 대체복무기관장(복무관리)
 ※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복무기간/분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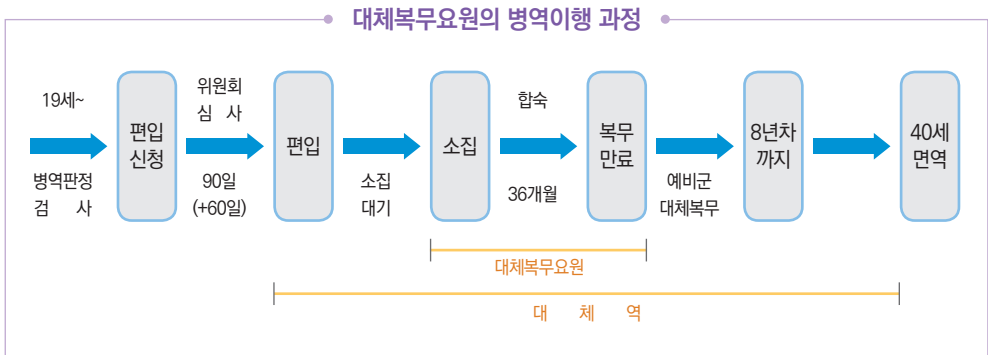
- 36개월/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분야/합숙복무

» 연장복무/제재

- 복무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복무/8일 이상 고발
- 근무태만 선동, 가혹행위, 영리행위 등 경고 시 5일 연장복무/경고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시 고발

» 예비군대체복무

-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연간 30일 이내 교정분야 복무 (예비군에서 대체역으로 편입한 사람 포함)





0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력동원훈련

■ 병력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은?

» 예비군 편성은 언제까지 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편성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됨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 받은 사람과 현역 간부가 전역 시 퇴역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

» 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전시·사변 또는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병력 동원소집자를 지정, 지정된 사람에 대해 동원절차를 숙지하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 평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임
- 따라서 동원훈련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함

» 언제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예비역 병은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되며,
-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됨

» 어디로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 동원훈련 장소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에 기재되어 있으며, 통지서는 E-mail,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음
- 또한 병무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동원훈련일자와 교통편 조치가 가능

용어설명

- ✓ 예비군 :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 침투 등에 대비 지역방위체제 확립 임무를 수행



» 동원훈련 참가시 복장과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 복장 :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아전상의: 동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공인자격증 중 1개 지참
- 준비물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본인 계좌번호 숙지(여비 입금용),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

» 대학생인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8시간)을 받게되며, 2박3일 동안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은 원하는 사람만 받음
- 그러나 휴학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동원훈련을 받게 됨

» 동원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연기원서를 제출하거나 통지서를 송부한 각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 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동원훈련 무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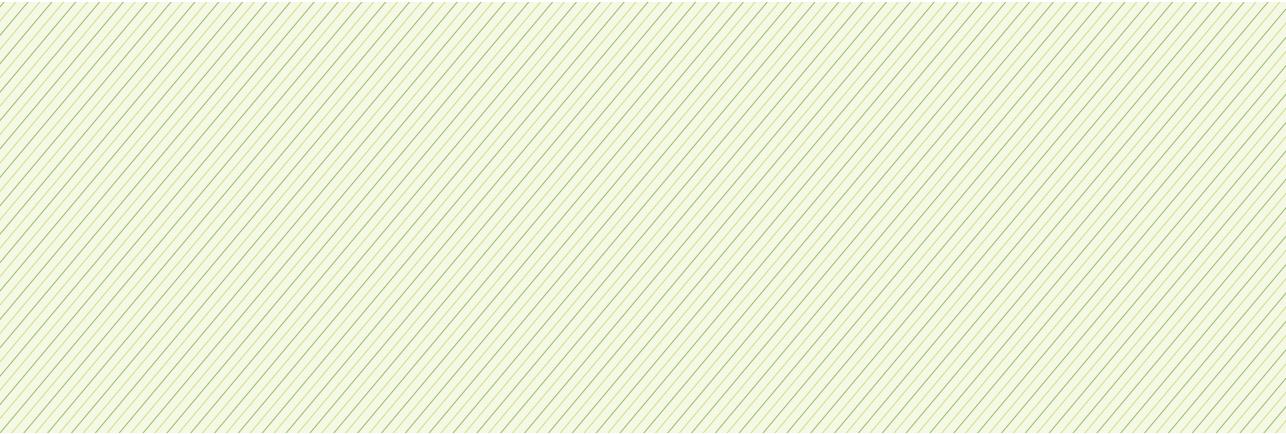
- 동원훈련은 1회 무단 불참시에도 고발되므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해야함

» 전역 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를 당해서 계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예비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됨
- 재신체검사 결과 예비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처분을 하게 됨

» 병역의무는 언제 종료가 되나요?

-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전신근로역, 대체역은 41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면역)되며,
-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병역의무가 종료(퇴역)됨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0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기 타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 병무부조리 신고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① 부양비율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 하는 제도

» 신청대상 및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수시(20세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해)
 - ※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출원 가능

서류출원

- 거주지 지방병무청
- 현역복무중인 사람은 입영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
- ※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포함)

- 현역병 또는 사회복지요원 복무중인 자 : 복무중 수시

» 병역감면 처리기준

- 부양비율 :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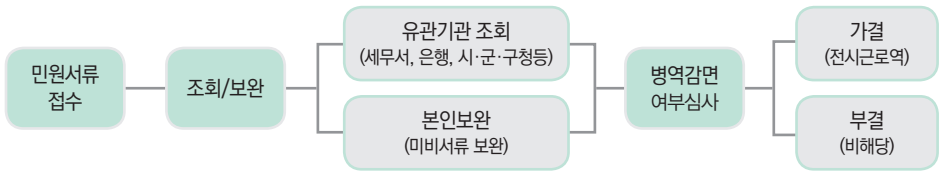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남녀	19세~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64세



-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0년 재산액 기준 : 7,410만원 이하
-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2020년 월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병역감면 처리절차



» 제출방법

- 병적지(현역병) 또는 거주지(사회복무요원)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우편 송부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제도란?

병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다만, 24세 이하자는 허가없이 출·귀국 가능

» 허가대상자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020년 기준 1995년 이전 출생자)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공보의 등)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라도 해외여행 허가대상

»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 단기여행

- 27세(국내 교육기관에서 28세까지 재학사유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까지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이내, 5회까지만 허가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

■ 유 학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이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까지

※ 학교별 제한연령

- 대학교 : 4년제는 24세, 5년제는 25세, 6년제는 26세(단, 의·치·한의·수의·약학과 대학은 27세)

- 대학원 : 석사2년제는 26세, 석사2년 초과는 27세, 박사는 28세(단, 의·치·한의·수의·약학과 석사과정은 28세)

- 연수·훈련 :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국내 교육기관에서 28세까지 재학사유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 국외이주 : 37세까지(영주권 취득한 그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접수

- 인터넷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해외여행/체제 → 해외여행허가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

※ 국외에서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 단, 국외이주, 국외취업 사유로 허가 신청시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함



» 허가절차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병역의무자) → 병역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처리(지방병무청) → 허가사항 전산입력 후 허가번호 부여(지방병무청) → 국외여행허가(지방병무청) → 허가서 지참 후 여권발급 신청(의무자) 여권발급(외교부) → 의무자 출국

※ 국외여행허가서는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또는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함

» 허가제한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자,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국외이주자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자,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자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원대상자

- 국외체재(승선 포함)중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국외불법체재자 제외)

» 민원신청 종류

-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사회복무), 국외체재자 입영신청 취소(사회복무)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 취소
 - ※ 종전 '국외체재자 입영신청' 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통합 일원화 됨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취소

» 출원방법 및 절차

- 우선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현역/사회복무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사회복무 → 민원신청 종류 중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 출원
 ※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PIN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처리결과 통보

-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



병무부조리 신고

»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지급

주요신고대상

- 병무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금품수수 등 불성실한 비위공직자
- 병역면탈 행위
(허위 정신질환, 허위서류발급, 고의체중조절 등)
- 복무 부실사항 등(경미한 복무위반사항 제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 신고자 절대 비밀 보장
- 포상금 10만원~2,000만원 지급

신고 방법

무료 전화 : 080-070-9090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미래의 디딤들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미래의 디딤돌이 되어줄 맞춤형 병역설계
병역이행 길라잡이

발행일 | 2020년 6월

발행처 | 병무청 병역공개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481-2971
Fax. 042-481-276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Tel. 02-2644-2911